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b>선<br/>람</b> | 기관의 장 |
|                |       |

**제 1134 호**

2013년 10월 14일 월요일

**공 고**

- 남동구의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 2  
공고 제2013-                    10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  |  |  |  |  |
|----------------|--|--|--|--|--|--|--|--|
| <b>회<br/>람</b>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고 제 2013 - 10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정이유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남동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해촉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지역치안협의회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7일 (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2, 5030 /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자                     | 해당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 . 주 소<br>. 성 명<br>. 연락처 |      |           |    |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별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박인동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511 |
|----------|------|

발의년월일 : 2013. 10. 10.

발 의 자 : 박 인 동 의원(1명)

찬 성 자 : 한정희,한민수,서점원 의원(3명)

#### □ 제안이유

-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남동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해촉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지역치안협의회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제116조의2
-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남동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남동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남동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남동소방서장, 인천공단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구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관련 전문가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해당업무 부서의 장 및 단체의 업무 관계자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1조(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지역치안사업 추진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안 제11조)되어 있어 재정적인 소요가 예상됨.

#### 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발굴 및 시행

사회4대악 근절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각종사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를(안 제11조)위하여 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2조)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됨

### 2. 비용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1) 안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 호에 의한 사업추진시 구청장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됨.



- (2)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긴밀한 치안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 4대악 근절을 위한 각종 사업비에 근거하여 향후 소요될 수 있는 사업비(운영비)를 추계함

## 나.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현재 치안유지를 위하여 소요되고 있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필요할 재정소요액을 계상함

[표 1] 제정안에 따른 총사업비 및 추가 재정소요 : 2013~2017년 (단위: 천원)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비 고        |
|---------------------|-----------|-----------|---------|-----------|-----------|------------|
| 합 계                 | 1,602,313 | 2,842,205 | 961,646 | 1,004,725 | 1,040,320 |            |
| 협의회 운영              | -         | 3,640     | 3,640   | 3,820     | 5,460     |            |
| 여성상담,교육문화사업         | 16,024    | 17,000    | 17,000  | 19,000    | 19,000    |            |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 189,885   | 199,379   | 209,347 | 219,814   | 219,814   | 년5%증가      |
|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 85,416    | 89,686    | 94,171  | 98,879    | 103,823   | 년5%증가      |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 25,000    | 25,000    | 28,000  | 28,000    | 30,000    |            |
|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 1,214,488 | 2,422,000 | 514,488 | 540,212   | 567,223   | 2014년 센터구축 |
| 꿈나무지킴이 (아동폭력예방)     | 5,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
|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 66,500    | 66,500    | 76,000  | 76,000    | 76,000    | 19개동       |

## 다. 재원조달 방안

성폭력, 가정폭력등과 관련된 예산편성액(가정복지과)은 국, 시비 보조사업이며 CCTV 설치 및 각종 재난상황등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등에 관한 예산은 시비가 일부 포함된 구비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원소요가 예상됨.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1]

작성자 :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의원 박인동

## 【붙임 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br>(2013년) | 2차년도<br>(2014년) | 3차년도<br>(2015년) | 4차년도<br>(2016년) | 5차년도<br>(2017년) | 계         |
|------------------------|-------|-----------------|-----------------|-----------------|-----------------|-----------------|-----------|
| 세 출                    |       | 1,602,313       | 2,842,205       | 961,646         | 1,004,725       | 1,040,320       | 7,451,209 |
| 협의회 운영                 |       | -               | 3,640           | 3,640           | 3,820           | 5,460           |           |
| 여성상담, 교육문화사업           |       | 16,024          | 17,000          | 17,000          | 19,000          | 19,000          |           |
| 성폭력 방지 및<br>피해자지원      |       | 189,885         | 199,379         | 209,347         | 219,814         | 219,814         |           |
| 성폭력 피해회복 및<br>재발방지사업   |       | 85,416          | 89,686          | 94,171          | 98,879          | 103,823         |           |
| 장애아동청소년<br>성인권교육       |       | 25,000          | 25,000          | 28,000          | 28,000          | 30,000          |           |
| CCTV 설치 및<br>통합관제센터 운영 |       | 1,214,488       | 2,422,000       | 514,488         | 540,212         | 567,223         |           |
| 꿈나무지킴이<br>(아동폭력예방)     |       | 5,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
|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       | 66,500          | 66,500          | 76,000          | 76,000          | 76,000          |           |
| 재원 조달                  |       |                 |                 |                 |                 |                 |           |
| 의존<br>재원               | 소 계   | 437,325         | 1,055,577       | 348,518         | 360,693         | 367,637         |           |
|                        | 보조금   |                 |                 |                 |                 |                 |           |
|                        | 국비    | 169,946         | 774,830         | 123,930         | 128,318         | 129,522         |           |
|                        | 시비    | 267,379         | 280,747         | 224,588         | 232,375         | 238,115         |           |
|                        | 지방교부세 |                 |                 |                 |                 |                 |           |
| 자체<br>수입               | 조정교부금 |                 |                 |                 |                 |                 |           |
|                        | 소 계   | 1,164,988       | 1,578,628       | 613,128         | 644,032         | 672,683         |           |
|                        | 지방세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지 방 채                  |       |                 |                 |                 |                 |                 |           |
| 기 금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타<br>(교육청)           |       |                 | 208,000         |                 |                 |                 |           |

## 【 참고자료 】

###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5-27 조례 제 524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기타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의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인천지방경찰청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지원) 시장은 협의회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3-05-27 조례 5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